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7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이건태·이개호·임광현

조인철 • 박지혜 • 김승원

안규백 • 문진석 • 강준현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또는 시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 침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 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군사법원의 재판관 주거지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			
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군사법원의 재판관 주거지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